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 | | |
|------|--------------|----|--------|
| 제정 | 1995. 4. 22 | 규칙 | 제 904호 |
| 전면개정 | 2001. 1. 20 | 규칙 | 제1086호 |
| 일부개정 | 2007. 3. 14 | 규칙 | 제1220호 |
| 일부개정 | 2008. 9. 3 | 규칙 | 제1242호 |
| 전부개정 | 2010. 11. 23 | 규칙 | 제1284호 |
| 일부개정 | 2011. 4. 7 | 규칙 | 제1292호 |
| 일부개정 | 2019. 2. 1 | 규칙 | 제1524호 |
| 전부개정 | 2019. 11. 22 | 규칙 | 제155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 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률,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100건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 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은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 기업
3.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

자료 선정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할 것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할 것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영 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세무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의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① 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

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또는 압수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세무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 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도지사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1. 22 규칙 제1550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 수칙(제41조 관련)

가.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전후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2)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사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 3) 세무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5)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6) 조사기간 중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세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7)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전달하고 부득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10)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

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라.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관리현장 재중)

| | 법인유형 | 주요 목적사업 |
|---|---|------------|
| <p>○ 법인명: (인)</p> <p>○ 법인등록번호:</p> <p>○ 대표자:</p> <p>○ 법인소재지:</p> <p>○ 사업년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p> <p>○ 작성자: (근무부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p> <p>○ 제출일자: 년 월 일</p> | <p>제 조 업 ()</p> <p>건 설 업 ()</p> <p>관 매 업 ()</p> <p>운 송 업 ()</p> <p>기 타 ()</p> |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서는 반드시 사업년도별로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 별(3개년) 각각 작성] 해 주시고 각 서식 작성 시 안양시 전체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경기도 안양시 ○○구 ○○○로 ○○○(○○동)

안양시청 ○○과 우편번호 : ○○○○○

※ 문의사항 전화 : (031)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그 밖의 법인 모두 해당)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 및 임차사항 포함)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건설업)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포함)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안분내역서 포함)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 | | | | |
|------|--|-----|--|------|--|
| 사업년도 | | 사업장 | | 사업장명 | |
|------|--|-----|--|------|--|

| 구분 월별 | ① 소 득 세 납 부 액 | | | | | | | | ②산 출 지방소득세 | 기납부 세 액 | 납부일자 |
|----------|---------------|--------|--------|--------|--------|--------------|-----|----------------|---------------|------------|------|
| | 근 로 | 퇴 직 | 배 당 | 이 자 | 사 업 | 법인세법 제98조 | 기 타 | 합 계 (과세표준액)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연말 정산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 제96조 (특별징수)참조
- 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 | | |
|---|----------------|--|
| ① | 소득세 구분란 |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 | 기타 |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 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
| | 법인세법 98조 (외국인) |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
| ② | 산출지방소득세 |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안양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사업장명 | 소재지 | 사업개시일 | 연면적 (a) | ①비과세면적 | | | | 과세면적 c(a-b) | ②정당세액 (d) | 기납부세액 (e) | 납부일자 | 차인세액 f(d-e) |
|------|-----|-------|------------|--------|------|----|-----------|----------------|--------------|--------------|------|----------------|
| | | | | 기숙사 | 구내식당 | 기타 | 소계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안양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1.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안양시 소재 사업장)-2015년 이전

<사업장명 : >

(단위 : 원)

| 구분 | 월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3월 (정산) | 계 |
|------------------|-------|--------|----|----|----|----|----|----|----|----|-----|-----|-----|-------------|---|
| | | ① 근로소득 | 급여 | | | | | | | | | | | | |
| 상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a 소계 | | | | | | | | | | | | | | | |
| ② 비과세소득 | 연장 | | |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b 소계 | | | | | | | | | | | | | | |
| ③ 종업원수 | 관리 | | | | | | | | | | | |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수시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과세표준c=(a-b) | | | | | | | | | | | | | | | |
| 급여지급일 | | | | | | | | | | | | | | | |
| ④산출세액c×(0.5/100) | | | | | | | | | | | | | | | |
| 기납부액 | | | | | | | | | | | | | | | |
| 납부일자 | | | | | | | | | | | | | | | |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3-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안양시 소재 사업장)-2016년 이후

<사업장명 : >

(단위 : 원)

| 구분 | 월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3월 (정산) | 계 |
|----------------------------|-----|-----------------------|----|----|----|----|----|----|----|----|-----|-----|-----|-------------|---|
| | | ① 근 로 소 득 | 급여 | | | | | | | | | | | | |
| 상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소계 | | | | | | | | | | | | | | | |
| ② 비 과 세 소 득 | 연장 | | |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소계 | | | | | | | | | | | | | | |
| ③월평균 급여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③=(④-⑥) | | | | | | | | | | | | | | | |
| 급여지급일 | | | | | | | | | | | | | | | |
| ④산출세액③×(0.5/100) | | | | | | | | | | | | | | | |
| 기납부액 | | | | | | | | | | | | | | | |
| 납부일자 | | | | | | | | | | | | | | | |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안양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3-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안양시 소재 사업장): 2015년 이전”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 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2.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안양시 소재 사업장): 2016년 이후 ”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월평균 급여: 납세의무 성립일에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종업원수 관계없음)
- ④ 산출세액: ③월평균 급여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㉔)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 | | | | | | |
|--------------------|---------|--|---------|--|----|--|
| 영 치 사 유 | | | | | | |
| 영 치 기 관 | | | | | | |
| 영 치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 영 치 공 무 원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입 회 인 | 소속 | | 직 | | 성명 | |
| 서 명 날 인 거 부 사 유 | | | | | | |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 일련번호 | 물 건 명 | 수량 | 제출자 | 소유자 | 비고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 | | | | | | |
|-------|-----|--|-----|-----|----|-----|
| 예치사유 | | | | | | |
| 예치기간 | 년 월 | | 일부터 | 년 월 | | 일까지 |
| 입 회 인 | 소속 | | 직 | | 성명 |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 일련번호 | 물건명 | 수량 | 제출자 | 소유자 | 비고 |
|------|-----|----|-----|-----|----|
| | | | | | |